기 업 성 장 응 답 센 터 운 영 규 정

목 차

저	세1장 총칙	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
	제1조 목	적1	
	제2조 적-	용범위1	-
	제3조 기	<u></u>	
	제4조 조	직 및 운영]	-
저	세2장 기업	규제혁신1	
	제5조 규>	제애로 신고 및 접수1	
	제6조 과	제검토2)
	제7조 과	제의 종결 및 결과 통보2)
저	세3장 기업	민원 보호),
	제8조 기약	업민원 피해신고 및 접수2)
	제9조 기약	업민원 처리)
	제10조 기	업민원 보호	}
부	후 칙···		3

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규정

2021.03.17. 제정(규정 제1319호) 2023.12.22. 일부개정(규정 제1450호)

제1장 총칙

- 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성장을 위한 규제혁신과 기업민원 보호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적용범위) 기업성장응답센터(이하 "응답센터"라 한다)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부 가이드라인(「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 구축·운영 가이드라인」) 및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, "공단"이라 한다) 제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조 (기능) 응답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 - ① 응답센터의 운영 및 관리
 - ②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애로사항 발굴 및 처리
 - ③ 기업민원 보호 및 피해사항 발굴 및 처리
 - ④ 기타 정부정책 지원 선도
- 제4조 (조직 및 운영) 응답센터의 조직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.
 - ① 응답센터 운영 총괄은 기획본부장으로 하며, 전담부서는 규제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한다.
 - ② 공단은 응답센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사 및 자동차안전연구원 등에 응답센터를 설치·운영하며,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12.22.>
 - ③ 응답센터는 기업규제혁신 및 기업민원 신고 등을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한다.

제2장 기업 규제혁신

- 제5조 (규제애로 신고 및 접수) ① 기업은 규제애로 사항을 응답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 규제애로 신고서를 이용하여 문서 및 구두로 제출할 수 있으며, 응답센터 전담부서에서 접수 후 검토자를 지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.

- ③ 응답센터는 접수된 의견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.
- 1. 규제과제 : 중소·중견기업 및 대기업 관점에서 규제존치 필요성이 낮은 과제로 법령 개정 등을 수반하여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과제<개정 2023.12.22.>
- 2. 애로과제: 규제과제는 아니지만 분명히 기업에게 불편 및 부담을 야기하는 과제
- 3. 해당없음 : 제기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검토·분석이 불가하거나 공단의 소관사항이 아닌 과제
- ④ 응답센터는 제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검토 및 처리가 불가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신고 기업에게 통보하고 즉시 처리를 종결 할 수 있다.
- **제6조 (과제검토)** ① 응답센터는 제5조제3항 각 호의 과제를 검토하여야 하며, 소관부서에 관련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. 소관부서는 응답센터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② 검토요청을 받은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과제를 검토한다.
 - 1. 수용: 기업의 개선의견을 전부 수용한 경우
 - 2. 일부수용 : 기업의 개선의견을 일부 수용하거나 대안제시 또는 조건부 형태로 수용한 경우
 - 3. 장기검토 : 수용여부 판단, 개선안 마련 등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등 일정기간 추가 검토·협의가 필요한 경우
 - 4. 수용불가 : 법·규정·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의견의 타당성이 낮아 수용이 곤란한 경우
 - 5. 기수용 : 이미 규정 · 제도에 반영되어 별도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
 - ③ 삭제 <2023.12.22.>
- 제7조 (과제의 종결 및 결과 통보) 응답센터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업규제애로 개선건의 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를 이용하여 기업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.

제3장 기업민원 보호

- 제8조 (기업민원 피해신고 및 접수) 기업은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응답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. 다만, 기업민원과 상관이 없는 일반민원이나 공단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경우,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경우 처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- 제9조 (기업민원 처리) ① 응답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한 신고내역은 응답부서 전담부서에서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.
 - ②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·검토서를 작성하여 전담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③ 전담부서는 소관부서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ㆍ검토서를 받
- 아 「규제입증위원회 운영 지침」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23.12.22.>
- ④ 전담부서 검토 후 소관부서에서는 기업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.

[종전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<2023.12.22.>]

- 제10조 (기업민원 보호) ① 기업민원인은 신고한 것으로 인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아니하다.
 - ② 응답센터는 기업민원 보호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업민원 보호·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한다.
 - ③ 업무담당ㆍ검토ㆍ처리자는 관련 당사자 및 관련자 외에는 비밀유지의무를 갖는다.
 - ④ 기타 기업민원 보호 및 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「민원처리규정」, 「기업민원 보호·서비스 헌장」에 따른다.

부 칙 <규정 제1319호, 2021.03.17.>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450호, 2023.12.22.>

이 규정은 2023년 12월 22일부터 적용한다.

■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규정 [별지 제1호서식](제5조 관련) <개정 2023.12.22.>

기업 규제애로 신고서

안녕하십니까?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는 기업인의 시각에서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규제의 발굴 및 개선과 더불어 법령규제에 대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의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. 이를 위해 우리 센터는 중소기업 규제애로 신고서를 접수하여 상담 및 사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문1) ○○님께서 평소 느끼시는 규제애로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.

문2) 위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어 주십시오.

■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규정 [별지 제2호서식](제7조 관련)

기업규제애로 개선건의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

 기본	건의제목						
사항	소 관 기 관			담당자			
	및 부서 및 연락처 <						
	0	•					
	0						
건의							
내용	<건의 주요 내용> ○						
 관련							
<u>법령</u> 기 관							
검토의견	[] 수용	[] 일부수용	[] 장기검토	[] 수용불가	[] 旣 수용		
0							
_							
0							
_							
-							
해외사례	0						
추진일정	○ (반드시 적시)				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■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규정 [별지 제3호서식](제9조 관련)

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검토서

기업고객		부서 담당자				
및 연락처		및 연락처				
제목 및			(년	월	일)
접수일 						
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 (제기내용)	<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> ○ <조치 필요사항>					
부서 검토의견	<검토의견>					
세부사항						
확인사항						
기타				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